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738호 2020. 9. 21.(월)

【조 례】

제1360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1361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1362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9
제1363호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8
제1364호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제1365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5
제1366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규 칙】

제 58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4
제 585호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예 규】

제 246호 공주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 60

【공 고】

제2020-194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6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0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등)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생 략)	제4조(임기 등)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1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탄천면 송학1리 반명란에 5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	반명	관할구역 (자연마을 또는 번지, 도로명주소)	비고
탄 천 면	송학1리	5반	햇님아파트(송학로 78)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송학1리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탄천면	송학리	1	송학1리	학동,방째,도람말,작은선덕,햇님아파트

공주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유구읍	석남리	1	석남1리	구장터
		1	석남2리	심암실,반월령,난뱅이
		1	석남3리	자개미,샛뜸,산재골,속뜸,안산말,아랫말
	백교리	1	백교1리	안골,신다리,웃말,음지말,양지뜸
		1	백교2리	석담,반월형,무심이,고동,뚝방,대버다
	노동리	1	노동리	아랫뜸,샛뜸,천석골,가는골
	유구리	1	유구1리	창말,비득제
		1	유구2리	구석담,숫절이,창말,서당골,당너머
		1	유구3리	우라실,통미,안작,달작,골마골,안말
	녹천리	1	녹천1리	수산,신설동,중골,아래녹문,위녹문,마랫뜰
		1	녹천2리	고재
		1	녹천3리	중뜸,접골,여드니골,안쟁이네,웃쟁이네
	신영리	1	신영1리	뱀골,안말,동부실
		1	신영2리	불당골,승주골,방가실,여드니
	신달리	1	신달1리	마루뜸,살포쟁이,안말,엄남골,웃말,지사골
		1	신달2리	샛뜸,가운데뜸,아랫뜸
	입석리	1	입석리	마당뜸,양지뜸,들똑거리,정골,서보리실
	명곡리	1	명곡1리	장대골,동대말,사기장골,시큰말
		1	명곡2리	배실,요골,도당골
	구계리	1	구계1리	음달뜸,양지뜸,배상골,중말뜸
		1	구계2리	아랫말,구재,중말,윗말
	연종리	1	연종리	띠아리,둥미,양달뜸
	세동리	1	세동리	상세동,중세동,하세동
	추계리	1	추계1리	음달뜸,양지뜸,용목동,점모퉁이,벌뜸,내기,동녁뜸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1	추계2리	잿뜸,중뜸,산막
	탑곡리	1	탑곡리	평뜸,도당골,샛뜸,개울뜸,호두나무골, 탑산이,웃골
	덕곡리	1	덕곡리	양지말,구당골,머그네미
유구읍	문금리	1	문금1리	장구먹,주막거리,적암
		1	문금2리	양지뜸,사장골,뒷골,주막거리,밤가시,골말, 불당골,적바위,용수골
	동해리	1	동해리	안동해,두멍골,큰삼막골,월촌,동호점,서다 동,선학동,묵은논
	만천리	1	만천1리	만년동,동계동,작은골
		1	만천2리	중미,안양골,옥화동
	18	32	32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이인면	이인리	1	이인리	송정,피천말,이인,명윤,우릉골,쪽다리
	만수리	1	만수리	상만,어전,하만,괴재
	오룡리	1	오룡리	윗조정,밤갓,하조,본오룡,지승골
	신흥리	1	신흥리	운천,음달뜸,송정,운천,잠판동,안너추골
	주봉리	1	주봉1리	쏘아기,주봉골,새말,산작골
		1	주봉2리	용호동,초왕동,볏바위,돌고지,앞고개
	목동리	1	목동리	남월,서정,방축골,돌마루,뱀날,즉절
	발양리	1	발양리	원발양,뒷골,수작골,벌문이,배랭이
	초봉리	1	초봉리	학수동,대골,봉감,푸새울,선근이,검바위
	용성리	1	용성1리	누에머리,용성,송정,괴남이,군두리
		1	용성2리	큰작골,작은작골
	구암리	1	구암1리	윗말,가운데말,당말
		1	구암2리	위군안,가운데군안,아래군안
	달산리	1	달산리	아래달밭,윗달밭,큰돌,산소골
	산의리	1	산의리	양촌,음촌,삼밭골,참새골,고실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복룡리	1	복룡리	사당말,고치골,샛갓,새말,쌍개,후천,창출
	반송리	1	반송리	선인동,용화동,반송,새뜸,삿대울
	이곡리	1	이곡리	주대,배실
	운암리	1	운암리	놋점,소명동,삼배실
	신영리	1	신영1리	학골,원신영,구래실
		1	신영2리	북다미,새터,용수막이
소 계	17	21	21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탄천면	삼각리	1	삼각1리	사장골,통산,장터,선덕이
		1	삼각2리	윗삼각,안말,아랫말,언고개
	광명리	1	광명리	왜말,텃골,금봉골,절골,대골,원봉,망덕
	장선리	1	장선1리	버들골,쌍봉,산디,대상마루
		1	장선2리	동촌,장마루,평촌
	안영리	1	안영1리	신매,샛터,새말,밤절,안괭맹이,너멍골,안골
		1	안영2리	탑상골,북당골,안영골,샘골
	덕지리	1	덕지1리	월양이,뒷골,너멍골,책골,아래쇠줄,
		1	덕지2리	종안이,물흘리기,아랫말,구터
	화정리	1	화정1리	윗뜸,행정뜸,기와집뜸
		1	화정2리	아랫가절,샛터,중뜸
	남산리	1	남산1리	산골,고니고개,홍성골,됨박골
		1	남산2리	살포쟁이,건너뜸,속뜸,새터,건평,안골
	가척리	1	가척리	아래뜸,너더리,청림,안말,돌정이,아랫뜸, 음달,양달
	정티리	1	정티리	감나무골,윗뜸,정그랭이,범안골,셋집매
	성리	1	성리	명막골,성리,윤산리,성재동
	송학리	1	송학1리	학동,방째,도람말,작은선덕,햇님아파트
		1	송학2리	동편,서편,토옥골
	분강리	1	분강리	기미절,창암,분창
	유하리	1	유하리	원산,버드골,술밑
	국동리	1	국동리	원국동,신전,성머리,송곡,오영골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운곡리	1	운곡리	수리넘어,즘말,상동,홍성골
	견동리	1	견동리	수쟁이,상정골,동촌,윗말,샘너머,벌미
	대학리	1	대학1리	신대,강산,신평,합천,대학동,작은오도재,큰오도재
		1	대학2리	중뜸,적골,굴덕이
소 계	17	25	25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계룡면	월암리	1	월암리	상정말,윗말,새뜸,인산수,주막거리,장터,안동네,중뜸
계룡면	봉명리	1	봉명리	신봉,모촌,중봉,상봉,내동
	기산리	1	기산1리	평지말,봉곡,소정,소아리
		1	기산2리	중대,원동,다라울
	화은리	1	화은1리	닭마루,중뜸,양말,중말
		1	화은2리	향포,거사울,가마동,경골
	내흥리	1	내흥1리	소룡,난뎅이,시화산,아래동네,교회동네
		1	내흥2리	안말,상난,동산말,게북골,고비동
	구왕리	1	구왕1리	하청소,상청소,용산,구룡말,만학골
		1	구왕2리	상반송,하반송,홍룡골,회관동네
	중장리	1	중장1리	상가,배살미,상거리,갑사,갑산소,윗장,
		1	중장2리	농방위,오미
		1	중장3리	되찬이,장작골,봉동,아래말,윗말,함뜨락,신장로
	하대리	1	하대1리	안터,신대장,석계
		1	하대2리	마루골,방아달,대낯들
		1	하대3리	신원대,동디,즘촌,감바위,고림정,사당골
	양화리	1	양화1리	별당마루,능산,원양화
		1	양화2리	보목,댓마루,안세실,밧세실
	경천리	1	경천1리	생평,구비안,주막거리,장터거리,삼거리,용머리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1	경천2리	동쟁이,성밑,윗말
		1	경천3리	용머리,등정골,상보안
	화헌리	1	화헌리	사거리,샛말,윗뜸,아래뜸,만가리,즘반, 시루미
	금대리	1	금대1리	금띄,서죽골,구룡말
		1	금대2리	삽작골,황새울
	상성리	1	상성리	동학골,양암,망은대미,안골,즘
	월곡리	1	월곡리	음정이,뒷골,평정말,밀머리,홍샘골
	죽곡리	1	죽곡리	대실,삼리,염천동,동뱅이,소골,범보기
	향지리	1	향지1리	범말,도라말,샛터말
		1	향지2리	양지편,아래말
	유평리	1	유평1리	학교앞,밤남쟁이,할림정,버들미
		1	유평2리	양달뜸,신곡
소 계	17	31	31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반포면	공암리	1	공암1리	공암,연전,양지말,북바위
		1	공암2리	수실,막골,어덕말
		1	공암3리	길만길, 송곡로, 공암제방길
	송곡리	1	송곡1리	내송
		1	송곡2리	외송
	마암리	1	마암1리	마암,원대,발량골,도덕골,청벽
		1	마암2리	마티
	봉곡리	1	봉곡1리	금천,정광터,가마봉,새뜸
		1	봉곡2리	원당
		1	봉곡3리	새울
	상신리	1	상신리	부도골,윗신수,꽃배,도예촌
	하신리	1	하신리	아랫신수
	온천리	1	온천1리	아래사기소,온전말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1	온천2리	사기소,박정자
	학봉리	1	학봉1리	자작바위,석봉,지석골
		1	학봉2리	밀목재,사기소,동월
소 계	8	16	16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장기면				**< 삭제> (2012.6.19.)**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의당면	청룡리	1	청룡1리	돌모루1길1~17,문화마을길,새동네길,의당로
		1	청룡2리	신성말,양턱골,시청골
		1	청룡3리	신한임대아파트 101동~106동
		1	청룡4리	신한임대아파트 201동~204동
		1	청룡5리	돌모루1길, 돌모루2길, 돌모루3길
		1	청룡6리	세광아파트 301동~303동
		1	청룡7리	와룡동길, 연수원길, 송정길(청룡리관할)
의당면	월곡리	1	월곡리	두턱재,도장골,덕골,가장골,주막거리,안골, 비기실,독정이
	두만리	1	두만리	양지말,음지말,중바위
	요룡리	1	요룡1리	요골
		1	요룡2리	오룡동
	오인리	1	오인리	양달,오료골(종전 우성면 목천리 일부 26필지 35,790㎡ 포함),주막거리,새텃말
	수촌리	1	수촌1리	윗태실, 아래태실(종전 우성면 목천리 일부 19필지 45,786㎡포함),신촌
		1	수촌2리	용호동(종전 우성면 목천리 일부 29필지 131,336㎡포함), 큰골, 하리
	율정리	1	율정리	월봉,송덕,양촌,부평,본동,삼거리뒤골
	유계리	1	유계리	아랫말,장내미,중고개,싸리골,두지매, 마름터,산정말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가산리	1	가산리	중산,가락골,군졸,조산
	중흥리	1	중흥1리	대평골,월계,부처모랭이,장석뜸,안산,새말, 조개명당,문앞
		1	중흥2리	중뜸,황사미,윗말,양달,음달
	도신리	1	도신리	신촌,도리미,밤골,신성,화신정
	덕학리	1	덕학리	서당,이라울,황년동
소 계	12	21	21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정안면	상용리	1	상용리	원터,복룡,독골
	화봉리	1	화봉1리	하정만,달성리,기와집말
		1	화봉2리	회촌,노적골,뛈막골
	평정리	1	평정1리	중정안,상정안,동막골
		1	평정2리	사직골,느진목이
	북계리	1	북계1리	새뜸,북촌
		1	북계2리	율암,속계
	석송리	1	석송리	신흥리,새을,안말
	전평리	1	전평리	동오리,관방,삼밭실
	쌍달리	1	쌍달리	달원,중뜸,적골,마시골
	고성리	1	고성리	화랑터,텃골,안터,안수골,고제골
	운궁리	1	운궁리	은학골,아랫말,뒷말
정안면	장원리	1	장원1리	구억말,강성기미
		1	장원2리	구활원
	보물리	1	보물리	아랫말,엄시동,등뜸,웃말
	어물리	1	어물리	아랫말,양짓말,음짓말
	내촌리	1	내촌1리	양달말
		1	내촌2리	음달말,고재골
	광정리	1	광정1리	새터
		1	광정2리	장터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1	광정3리	창말
	사현리	1	사현1리	되재,진등말
		1	사현2리	새실
	인풍리	1	인풍리	팔풍정,신아무니,뒷말
	태성리	1	태성리	아랫개터
	대산리	1	대산1리	산수말,죽암리,원뱅이,가락골
		1	대산2리	오지골,곳집말,안소랭이,구름뱅이
	월산리	1	월산1리	평풍골,화평,남학골
		1	월산2리	월안이,고덕동,개터,중산
	문천리	1	문천리	섬밭말,문성,탑거리,아랫마을
	내문리	1	내문리	안골,용문
	산성리	1	산성리	먹뱅이,문달안이,신뱅이,주막거리
소 계	22	32	32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우성면	동대리	1	동대리	난대골,샘거리,가장골,장승백이
	단지리	1	단지리	월구리,가마울,단평,지게실
	방문리	1	방문1리	방축골,새말,함적골,신동
		1	방문2리	밭골,문동골,새터
	상서리	1	상서1리	뱀고지,질마고개,신대말,중뜸,방랑출, 윗말,토광
		1	상서2리	철목,길풍,개경자,주막거리
	평목리	1	평목리	평나무쟁이,들목,장구먹이
	도천리	1	도천리	약천,도고머리,해포,역골
우성면	신웅리	1	신웅리	갱변달,삼박골
	내산리	1	내산1리	동성,정사골,승지골,주막거리,새터,안골, 남산터
		1	내산2리	중말,장터,주막거리
	한천리	1	한천리	대추나무쟁이,중영천,상영천,독장골,먹방이
	동곡리	1	동곡리	항고개,조왕골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반촌리	1	반촌리	평촌,금기터,양달,봉왕골,배나무실,새동네
	귀산리	1	귀산1리	심산,번안이,새뜸
		1	귀산2리	검바위,민마루,엉투장이
	목천리	1	목천1리	서산,구름이(종전 의당면 수촌리 일부 71필지 197,018㎡ 포함),평뜸,개통모퉁이,상대
		1	목천2리	나물,건너말,도람말
	방흥리	1	방흥리	월대,구렛말,내댕이,내칭이,먹벵이
	보흥리	1	보흥1리	양지말,분토골,나루터,사무실
		1	보흥2리	보적골,수로골,새터말,텃골
	대성리	1	대성1리	돌고지,작은작골,절골
		1	대성2리	대문안,세동,새터밭
	옥성리	1	옥성1리	윗성머리,아래성머리
		1	옥성2리	작골,개전리
	용봉리	1	용봉리	반곡,새동네,신영골,용신동,뱀덕골,공수원, 벌뜸
	안양리	1	안양리	덕바위,고양골,독안동
	봉현리	1	봉현리	묘재,사룡동,당골,무재,간모레기,굴티
	어천리	1	어천리	여우네,재지골,버든여울
	죽당리	1	죽당리	은골,대수풀,장기동,강당
	오동리	1	오동리	먹으름
소 계	23	31	31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사곡면	호계리	1	호계1리	만수동,능계,텍사잔이,벌뜸,통메
		1	호계2리	남계리,새뜸,장터,산너머
	신영리	1	신영1리	신평,다박골,도갱이,양지편
사곡면		1	신영2리	마상골,대광터,윗말
		1	신영3리	통천포,윗안양골,아래안양골
	화월리	1	화월1리	약산,월은동,계봉,숫골,강변말,갯말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1	화월2리	명당골,고순이,국제,안터
	계실리	1	계실리	납음배,양촌,음촌,산막
	해월리	1	해월1리	웃말,새뜸,호지봉골,복뜸,양지뜸
		1	해월2리	산수골,딴정리,안산수골,새터
	고당리	1	고당1리	양지말,아래뜸,큰말,중뜸,돌뜸,시루터
		1	고당2리	밭단평,안단평,장구먹
	대중리	1	대중리	돌고개,서뜸,범골,안터,동아시,여찬이
	가교리	1	가교1리	장다리골,웃말,평뜸,도화동,주막거리,큰뜸, 뒷뜰
		1	가교2리	새뜸,큰뜸,새알골
	운암리	1	운암1리	화전,턱베뜸,윗뜸,중뜸,구름재뜰
		1	운암2리	장밭,주막거리,상원골,마가본동,샘골, 학교말
	회학리	1	회학리	말구리,검새울,안승회동,바깥승회동
	월가리	1	월가리	다락골,강탄,모단,잿밭,밥박골,중터,금계골 ,삼박골
	유룡리	1	유룡리	터골,새터,근전,양촌,용수골,음촌
	부곡리	1	부곡리	건너마을,웃말,밤상골,광골,뒷골
소 계	13	21	21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신풍면	산정리	1	산정1리	벌뜸,새터,윗말,골뜸
		1	산정2리	고도실,심방을
		1	산정3리	주막거리,황새골,밭가운데,풍곡
	동원리	1	동원1리	원골,행교골,송터,가장골
		1	동원2리	동막이,화장이
	조평리	1	조평1리	신촌,양지뜸,벌뜸,평말,소꼴,양지말,사박골
		1	조평2리	새터말,구산지골,구본실
	봉갑리	1	봉갑리	봉곡,봉암,줄바위,상가패
신풍면	용수리	1	용수리	용산,설학동,월개,학수,수선동

읍.면 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자연부락명)
	쌍대리	1	쌍대리	양지뜸,음지뜸,유투정이,아랫말,위말, 한석골,짐대울,토끼울
	청흥리	1	청흥리	삼천동,죽청,솔티
	대룡리	1	대룡1리	무르실,새뜸,중뜸
		1	대룡2리	용강,말바위,정자뜸,골말,새위재
	입동리	1	입동리	굴티,갓골,말안
	백룡리	1	백룡1리	정골,내동말,부기동,황금절,가말,밤모랭이, 오름실
		1	백룡2리	큰뜸,중뜸,모실
	선학리	1	선학리	학동,중뜸,욕골,오선대,갱변뜸
	영정리	1	영정리	냉정,마세,복골,성황당
	평소리	1	평소리	평촌,덕동,사랑골,새터,점촌
	화흥리	1	화흥리	물안이,알밤골,위말,아랫말
소 계	14	20	20	
합 계	161	250	2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할구역 (자연마을 또는 번지, 도로명주소)
탄천면	송학 1리	1반	작은선덕
		2반	도랑말
		3반	학 동
		4반	방 째
		<u>**<산쌀>**</u>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할구역 **(자연마을 또는 번지, 도로명주소)**
탄천면	송학 1리	1반	작은선덕
		2반	도랑말
		3반	학 동
		4반	방 째
		<u>**5반**</u>	<u>**햇님아파트(송학로 78)**</u>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2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부서장, 예산·재산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인 이상 포함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이 1년 미만으로 1억원 이하의 일회성,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며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소셜네트워트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㉔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㉕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㊴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㊷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52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3호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무용·연희 등 전통공연예술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예술을 모두 포함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산업(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국악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
2.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4. 국악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국악자료집 발간사업
5.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6.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

7.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4호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3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도자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조사·연구
2.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전시회 등 개최
3. 지역 도자문화 국내ㆍ외 교류 사업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3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도자문화시설의 입주) ① 제6조제3항의 도자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② (생 략)	제5조(도자문화시설의 입주) ① 제4조제3항----------.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위탁의 철회) ----------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의 경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위하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지원할 --------.
1.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1. 도자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조사 、 연구
<신 설>	2.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전시회 등 개최
<신 설>	3. 지역 도자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2.、3. (생 략)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3. 그밖에 도자문화산업진흥, 도자공예마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 ---------- ---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 필요---------- ------.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5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우금티 방문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금티 전적지”란 사적 제387호로 공주시 금학동 327-9번지 일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그 소관 부서장과 문화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문화재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회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념사업 및 방문자 센터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4.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영상 제작 및 발간사업
5. 우금티 전적지 관리 및 방문자센터 운영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방문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우금티 전적지를 보존·관리하고 방문자의 관람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금티 방문자센터(이하 “방문자센터”로 한다)를 우금티 전적지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적 자료 전시
2. 우금티 전적지 홍보 및 안내

3. 우금티 전적지 방문객 쉼터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

5. 그밖에 시장이 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우금티 전적지 및 방문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자센터의 위탁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이용대상) 방문자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방문자센터의 개방) ① 방문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4. 그 밖에 보수·점검 등 방문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시간) ① 방문자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이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9. 8.)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조례　제1366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흥동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를 “금흥동418-13번지 일원, 금성동 20-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 일원에 두며 “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산성동 174-37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5년 --------. ③ (현행과 같음)

2020년도 제12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규칙　제58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9”를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읍장·면장·동장의 직급) (생 략) <신 설>	제46조(읍장·면장·동장의 직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동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직급·직렬별 정원) ①·② (생 략)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 (생 략)	제48조(직급·직렬별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9]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 (제48조 제2항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대상직위
총 계	2			1		1	
4급 소계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소장
5급 소계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중학동장

2020년도 제12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9월 21일

공주시 규칙 제585호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8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공주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주시장 김 정 섭

2020년 9월 9일

공주시 예규 제246호

공주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한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회계부서의 장”이란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별표 1에 따른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의 구매·사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목적,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매년 초 예측 가능한 상품권 필요량을 파악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경우
2. 여러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④ 상품권 관리자는 3백만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상품권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재난

지원금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3만원범위내 지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사용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 담당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이하“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의 구매내역에는 구매일자, 품명, 구매목적, 구매처, 결재방법, 예산과목, 구매수량, 단가 및 금액을, 배부내역에는 배부일자, 배부처, 지급수량, 잔량, 수령인 소속 및 성명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한다.

③ 상품권의 대상 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배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할 때에는 관리대장의 수령인 란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9조(상품권의 보관)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후 3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보관 의뢰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84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기관별 정기 감사 시 다음 각호의 상품권 구매·사용·관리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등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예규 246호, 2020. 9. 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제7조 관련)

연번	구매 내역									배부 내역						결재		
	구매 일자	품명 (종류)	구매 목적 (용도)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구매 수량 (매)	단가 (원)	금액 (원)	배부 일자	배부처	지급 수량	잔량	수령인		담당자	팀장	부서장
														소속	성명 (자필 서명)			
1																		
2																		
3																		
4																		
5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 공개(제 11조 관련)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금액단위 : 원)

연번	상품권 종류	구매수량	구매액 (상품권 액면가)	구매용도	부서명
1		"작 성	예 시"		
2	○○○ 상품권	10	100,000	○○시상품	
3					

공주시 공고 제2020-194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2항의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감사담당관-8562(2019.11.4.)호 공문에 따라 일비 및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 시 출장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추가(안 제4조의2)

- 여비의 부정 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함
- 여비의 부정 수령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함

○ 출장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별표 1, 별표 2)

- 감사담당관-8562(2019.11.4.)호에 따라 일비 및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 시 출장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출장여비 수령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1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회계과(재무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52 / FAX : 041-881-9679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회계과 재무팀 (☏ 041-840-825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81-967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2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5조제3호 중 “인사혁신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2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 2. (생 략)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 2. (생 략)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현 행>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개정안>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출장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출장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